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2
----------	------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27일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1명)

찬 성 자 : 강구덕 · 김기만 · 남재경 · 최호정 ·
김경자(강서) · 유동균 · 장인홍 ·
김춘수 · 김광수(노원) · 김혜련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3조)

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정부조직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학계·언론계·기업계·민간단체·시의원·공무원”을 “학계·언론계·기업계·민간단체·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 ① ~ ③ (생 략)</p> <p>④ 위원은 <u>학계·언론계·기업계·민간단체·시의원·공무원</u>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 ⑦ (생 략)</p> <p>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u>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u>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5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u>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u>이 고시</p>	<p>제7조(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학계·언론계·기업계·민간단체·서울특별시의회</u> 의원·공무원 ----- ----- ----- -----.</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13조(수당 등) ----- ----- -- <u>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u> --. ----- -----.</p> <p>제35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 ----- ----- ----- ----- <u>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p>

하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